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전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김명수
전화 042-470-4041 / 팩스 042-470-4240

보도자료

2020. 9. 14.(월)

제 목

자율주행차량 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(부장검사 김윤희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‘자율주행차량 라이다’ 관련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,

- 대전지역 A대학 소속 교수가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사실을 규명하여 구속 기소하였음

※ 라이다(LIDAR, Light Detection and Ranging)는,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이고,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서 향후 표준 기술 등으로 채택 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첨단기술임

● 대전지검은 ‘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 센터,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 예정임

1] 피고인

- 가○○(58세, A대학 교수, 구속)

2]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

- ‘17. 11. ~ ‘20. 2 중국의 『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』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,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A대학 보유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 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,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업무상배임]

- '17. 9. ~ '20. 7. 피고인이 관리하는 A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,000만원을 운영비 외적으로 유용 [업무상배임]
- '18. 3. ~ 10. 피고인이 고용한 연구원이 A대학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하여 2,000만원을 편취 [사기]
- '19. 10. 해외파견·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서 A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업무 및 총장의 승인 업무를 방해 [업무방해]

③ 수사 경과

- '20. 5. 13. 대검, 과기부 고발장 접수 후 대전지검 배당
- '20. 5. 15. 가○○ 주거지,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'20. 5. 16.~8. 26. 압수물 분석, 가○○ 및 참고인 조사, 전문가 기술자문 등
- '20. 8. 27. 가○○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
- '20. 9. 14. 가○○ 구속 기소

④ 수사 결과

- 과기부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음
- 검찰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임
- 또한,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요 첨단 기술의 보호 및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기부,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,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